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「학생인건비 계상기준」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일부개정 알림

1. 관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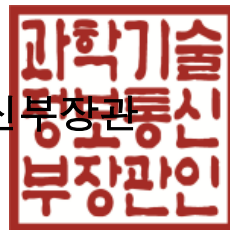
가.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[별표2]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나.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3호

2. 위 관련으로 「학생인건비 계상기준」 이 2018.2.21.일자로 붙임2와 같이 일부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리니, 각 부처(청)에서는 관련 규정·지침 등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는 개정된 시에 따라 기관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조속시 제정·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,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소속 연구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학생인건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

- 붙임 1.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주요 개정사항. 1부.
- 2.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1부. 끝.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



수신자 정부기관, 대학교

행정주사 김민정 연구제도혁신 전결 2018.3.20.
과장 이재훈

협조자

시행 연구제도혁신과-393 (2018. 3. 20.) 접수

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, 정부과천청사 (중앙동) / <http://www.msit.go.kr>

전화번호 02-2110-1688 팩스번호 02-2110-0230 / rurria@korea.kr / 대한민국 공개